의안번호	5117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의 원	이순열 의원 외 10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순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17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8일
발 의 의 원 : 이순열,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 “거리공연”, “거리공연가”

다.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3조~제4조)

라.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안 제6조)

마. 거리공연 질서유지 (안 제8조)

바. 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행위예술, 연극 등을 실연하거나 전시하는 문화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주체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거리공연 장소의 이용자는 도로점용, 시설 사용, 소음 및 안전 등에 관한 관계 법령과 해당 시설의 이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소음, 보행 방해, 안전사고, 불법 상행위 및 환경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

해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공공장소 이용 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2. 공연 장소·시간 및 음향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4. 공연 장소의 질서유지 및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연이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

②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2025. 3. 25.>

⑥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 31.>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